

의안번호	제633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7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33

제출연월일 : 2024년 7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(안 제10조의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) ① 도지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10조의2(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) ①</u> 도지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②</u>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·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원기준 : 도내 6개월 이상 거주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
- 사업량 : 3,500가구
- 사업내용 : 출산 비용 대출 1,000만원 한도 내 3년간 年 최대 6% 이자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추진

3. 관련조문

- 안 제10조의2(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추계의 전제 : 대출 이자 3년 지원에 따른 예산액 지속 증가
- 추계 결과 :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21,240백만원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지방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
세 출	21,240,000	2,100,000	3,780,000	5,120,000	5,120,000	5,120,000
재원 조달	21,240,000	2,100,000	3,780,000	5,120,000	5,120,000	5,120,000
자체수입 (지방세)	21,240,000	2,100,000	3,780,000	5,120,000	5,120,000	5,120,000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